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15 선고 2023가단2051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현 담당변호사 오세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 광주시 C 임야 3,631㎡에 관하여 D과 피고 사이의 2022. 1. 25. 자 근저당권부확정채권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7,6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시 C 임야 3,631㎡(광주시 E 임야 3,572㎡가 등록전환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6. 1. 2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2016. 1. 27. F의 소유로 되었다.

나. F은 2018. 3. 15. D에게서 4억 4,000만 원을 변제기 2019. 6. 30., 이율 월 0.97%로 하여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13. 그 공정증서(공증인 G사무소 증서 2018년 제335호)를 작성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7. 9.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D은 2020. 1. 2. 위 채권최고액 중 1억 원을 H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D은 2020. 5. 6. 나머지 1억 원의 채권을 I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21. 4. 1. 이를 이전받았으며, 다시 2022. 1. 25. 채권 1억 원을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2020. 9. 3.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F으로부터 주식회사 J(대표이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어 2020. 9. 21. 주식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는 2020. 10. 8. 다시 주식회사 L 앞으로 이전되었다.

마. F은 D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집행의 불허를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403993)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공정증서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F의 채무 즉, 4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월 0.97%의 이자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 중 각 1억 원이 H과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므로 D의 채권은 285,925,849원 및 그중 남은 원금 240,000,000원에 대한 2018.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월

0.97%의 이자라고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3나18849)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단620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11. 30.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 N(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2023. 6. 22.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D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와 H에게 각 1억 원이 배당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90,611,684원은 O의 근저당권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P에게 배당되었다.

아. J은 D 앞으로 마쳐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가단231058), 그에 따라 집행법원은 2023. 6. 30.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0,007,671원(배당표의 1억 원에 법정이자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을 공탁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4. 7. 10.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9. 말경 위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9, 10, 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1억 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아들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D이 피고에게 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양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

D이 2021. 3. 31. 피고에게서 1억 2,250만 원을 빌려서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I에게 이전해 주었던 1억 원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22. 1. 25. 이를 피고에게 이전해 준 것이다. 그 부동산이 D의 소유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가 이로써 원고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도 아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1. 11. 30. 1억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인용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청구원인인 차용증 작성일이 2020. 8. 31.인 사실(갑 제1호증)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D의 채무초과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사해행위 당시 D이 위 판결에 따른 채권 289,925,849원과 그중 2억 4,000만 원에 대한 2018. 3. 15.부터 2022. 1. 15.까지 지연손해금 107,914,064원 합계 393,839,913원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 원리금 186,932,602원, H에 대한 채무 1억 원, 피고에 대한 채무 122,500,000원 합계 409,432,602원이 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약 22억 원을 넘고 그 채무를 공제하면 7억 원 상당의 가치가 남아 있으며, D에 대한 채권자들인 H과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1억 원의 근저당권부채권양도가 있었으므로 이들에 대한 채무 중 각 1억 원을 공제하면, 사해행위 당시 D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D의 적극재산

가) D이 F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22. 1. 25. 무렵의

원리금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393,839,913원이다.

- 원금 4억 4,000만 원 중 H과 피고에게 이미 양도한 각 1억 원을 뺀 2억 4,000만 원
- H에게 양도된 1억 원에 대한 2018. 3. 15.부터 양도일인 2020. 1. 2.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0,964,516원 [= 1억 원 x 0.97% x (21개월 + 19일/31일)]
- I에게 양도되었던 1억 원에 대한 2018. 3. 15.부터 양도일인 2020. 5. 6.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4,961,333원 [= 1억 원 x 0.97% x (25개월 + 22일/30일)]
- 남은 원금 2억 4,000만 원에 대한 2018. 3. 15.부터 2022. 1. 25.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07,914,064원 [= 2억 4,000만 원 x 0.97% x (46개월 + 11일/31일)]

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2,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시인 2022. 1. 25.에는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가 이미 J 앞으로 이전한 상태인 점, 이 사건 토지는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매각대금이 없는 점, D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234759)에서 승소한 J, K, L 역시 변제자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결국 D의 F에 대한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적극재산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D의 소극재산

가) 원고에 대한 채무: 186,932,602원

원금 1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9. 1.부터 2022. 1. 25.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26,932,602원 [= 1억 6,000만 원 x 12% x (1년 + 147일/365일)]

나) 피고에 대한 채무: 22,500,000원

피고가 주장하는 122,500,000원 중 위와 같이 채권양도로 변제된 1억 원을 뺀 나머지

다) H에 대한 채무: 위 채권양도로 소멸

라) 합계 209,432,602원

4) 결론

D은 이 사건 사해행위 무렵부터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주관적 요건

D이 2022. 1. 25.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일부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D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D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서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당시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D과 피고 사이에 2022. 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가액반환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이미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그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100,000,000원을 배당받았다가 법정이자를 포함한 공탁금 100,007,671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100,007,6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엄원섭